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지역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제1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의 보전녹지지역 및 다목적 자연녹지지역.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1항에서 정하는 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2. 제2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관리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나목의 생산녹지지역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도시공원

라. 본 조 제1호의 제1종 조명환경관리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

3. 제3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의 전용주거지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의 일반주거지역, 다목의 준주거지역 단, 준주거지역 중 제4호가목의 지역은 제외한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의 준공업지역 중 주거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제4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나목의 일반상업지역, 다목의 근린상업지역, 라목의 유통상업지역

5. 제5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가목의 중심상업지역

6. 제6종 조명환경 관리지역

- 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의거 지정된 별표1의 관광특구. 단, 관광특구 중 종로·청계 특구는 제외한다.
- 나.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행사, 빛축제 개최지역
-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역

제3조(빛방사 허용기준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지역에서의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건축물 표면휘도 측정방법) 야간에 조명대상물이 보이는 정면에서 건축물 표면의 휘도를 밝기 변화를 고려하여 5회 이상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평균값을 건물표면 휘도로 본다.

제5조(조명기구의 설치기준) 조례 제8조에서 옥외조명 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기준, 설치위치, 등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6조(점등 및 소등 운영)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조명시설의 점등 및 소등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조명 및 건축물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정각에 한다. 단, 미디어파사드조명 연출은 매시 10분간만 영상을 표출할 수 있다.
2.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정각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사 종료 시에 소등한다.
3. 구조물 및 시설물에 설치한 경관조명은 일몰 후 30분 이후에 점등하고 소등은 23시 정각에 한다. 다만 지하철고가구조물 및 고가차도구조물 등에 설치한 경관조명이 하부의 도로조명기능을 충족할 경우에는 도로 조명 시간대에 점·소등 할 수 있다.

4. 주유소의 조명은 일몰 후 점등하고 소등은 영업시간까지로 한다.
 5. 위 각호의 조명시설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체되는 행사에 동참하는 경우에는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 각호의 점등 및 소등시간은 자동으로 점소등 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7조(지도 또는 권고) 시장은 조명설치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조명시설 개선을 지도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사업 승인신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이하“경관조명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조명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사업에 따른 위원회 심의 후 사업승인을 거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경관조명사업비의 10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자치구와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은 경관조명사업비의 10분의 7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2. 자치구 등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경관조명사업비의 1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3. 서울특별시의 주요역점사업으로서 과급효과를 고려한 한정적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경관조명사업비의 전액을 지원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사업에 관하여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빛축제행사에 민간이 참여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조명에 소요된 전기요금의 10분의 5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사업의 착수신고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 경관조명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조명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조명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에 대한 평가)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부족 등으로 직접 평가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세부시행기준 및 평가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조명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관조명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조명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조명협정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조명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조명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조명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경관조명협정의 승계) 경관조명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조명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조명상 시상분야 및 인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상 명칭 및 시상분야,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상명칭은 “서울특별시조명상”이라 한다.
2. 시상분야는 조명학술, 조명기구제조, 설계, 시공 등의 분야로 한다.
3. 수상대상자는 제1항 2호의 시상분야에 공적이 뛰어나며,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수상 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위원회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에 의한다.

③ 시상은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3월 6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은 별표4와 같다.

⑤ 시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패, 메달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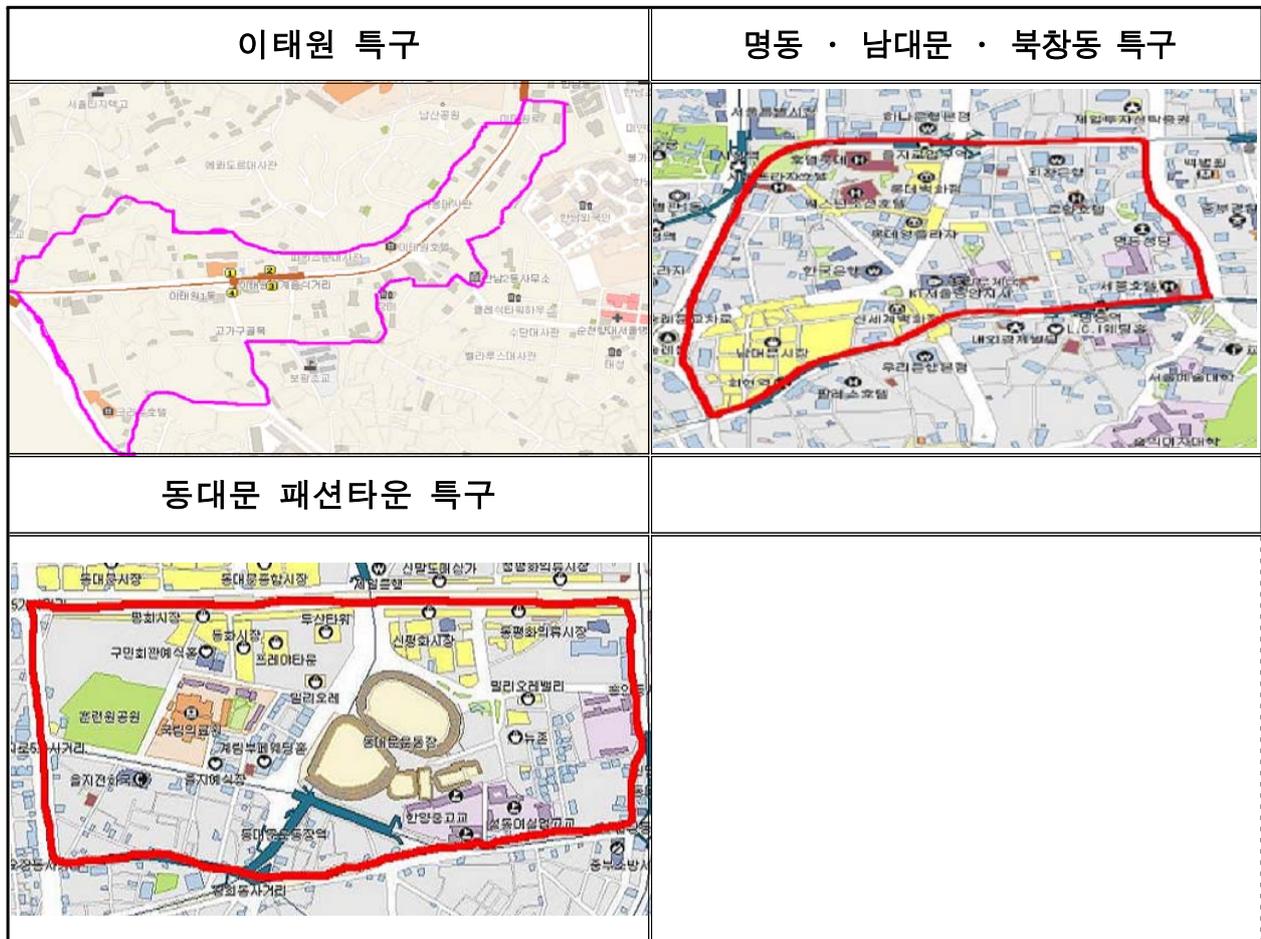
[별표 1]

서울특별시 관광 특구

○ 지정현황

자치구	특 구	지 정 일	면적 (㎡)
용산구	이 태 원	'97.9.29	383,292
중 구	명동 · 남대문 · 북창동	'00.3.30	633,514
	동대문 패션타운	'02.5.23	585,709

○ 지정위치



[별표 2]

상향광속률 및 건축물 표면휘도 기준

조명환경관리지역	세부지역 구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제1종 조명환경관리지역	규칙 제2조 1호의 가목 지역	0%	0cd/m ²
제2종 조명환경관리지역	규칙 제2조2호의 전지역	5%	5cd/m ²
제3종 조명환경관리지역	규칙 제2조3호의 가목 지역	10%	10cd/m ²
	규칙 제2조3호의 나목, 다목 지역	15%	15cd/m ²
제4종 조명환경관리지역	규칙 제2조4호의 전지역	20%	20cd/m ²
제5종 조명환경관리지역	규칙 제2조5호의 전지역	25%	25cd/m ²
제6종 조명환경관리지역	규칙 제2조6호의 전지역	30%	30cd/m ²

[별표3]

조명기구의 용도별, 지역별 설치기준

○ 도로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도로조명 등급	노면평균휘도 (cd/m ²)	휘도균제도(최소허용치)		눈부심지수최대허용치(%)	차광각 수평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종합균제도(uo)	차선축균제도(ui)			
M1	2.0	0.4	0.7	10	25%이하	
M2	1.5	0.4	0.7	10	“	
M3	1.0	0.4	0.5	10	“	
M4	0.75	0.4	-	15	“	
M5	0.5	0.4	-	15	“	

○ 보행등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야간보행자교통량	지역	조도(L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도로, 주변 환경여건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수평면조도	연직면조도	
교통량이 많은도로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도로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 보안등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등에 준하여 설치하되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주택지역은 5lx,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주택지역은 3lx로 한다. 조사각도는 KSC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LED 보안등은 KSC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1558호의 권장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일반보안등의 경우에는 색도는 3,000K이상,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도로, 주변 환경여건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 경관조명(건축물, 교량구조물 등)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원은 노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란한 빛의 움직임을 지양하고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자제한다. 옥탑부근 강조 조명을 지양하고 주변건축물 빛 침해를 방지한다.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의 조화유지 및 조명기구의 효율을 제고한다.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및 시설물에 가능한 보이지 않게 설치한다. 도로, 주변 환경여건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 오픈스페이스조명(공원 등)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구분	장소	추천조도(lx)	조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로의 편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로, 주변환경 여건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색온도는 3,000K 이상,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한다.
건물	입구	30 - 40 - 60	KSC7611 기준	
	통로	30 - 40 - 60	“	
공원	전반	6 - 10 - 15	“	
	주된 장소	15 - 20 - 30	“	
정원	길, 집밖, 층계	30 - 40 - 60	“	
	나무, 꽃밭, 석조공원	30 - 40 - 60		
	배경-관목, 나무, 담장	6 - 10 - 15	“	
	전반조명	15 - 20 - 30		
조명방식	경관은 간접조명방식, 길(원로)은 간접조명 또는 볼라드 조명			

○ 문화재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구분	문화재휘도(cd/m²)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휘도(cd/m²)	휘도규제범위	색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기구는 가능한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화재경관을 충족하는 높이로 하되 경관미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녹지 주거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휘도기준의 150%까지 허용	1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 구역경계로부터 100m이내 시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 구역경계로부터 50m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환경 과 조화롭게 선정 컬러조명 제한 	
업무 산업		20이하			

○ 발광광고물 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용도	최대표면휘도 (cd/m ²)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	대형전광판최대 표면휘도(cd/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광광고물법에 따라 설치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도로 및 주변환경과 건축물 경관이 조화롭게 설치한다.
녹지	50	불가	직접조명 지양	원색지양	설치불가	
주거	400					
업무 상업	도로 폭 25m미만	800	발 기색 상 변화시간이 1분이상시 허 용	-	1,000	
	도로 폭 25m이상			-	1,500	
문화재 주변	50m이내	불가	직접조명 지양	원색지양	설치불가	
	100m이내					100

○ 미디어파사드 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작품성이 없는 경우와 광고가 있는 경우는 설치할 수 없다.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연출하여야 한다.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및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한다. 표면휘도는 조명환경관리지역의 기준을 준수한다. 영상표출 타임은 경관조명심의 시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부심이 없게 설치하고, 광원에서 표출되는 빛이 누광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은 대상 조형물에만 비추도록 배광을 광학적으로 계획하고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 미디어파사드 서울성곽 안 허용기준

절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조건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	경관조명특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특성보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 서촌, 인사동, 동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 지정문화재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 50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복궁일대 역사특성거점 및 서울성곽 축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경관조명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권형성(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명동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되어 가이드 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

○ 미술장식품 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각도는 대상물에만 비추도록 하여 눈부심이 없도록 한다. ◦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장식품이 잘 표현되도록 연색성과 색온도를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조명색상은 변화되지 않도록 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람의 손에 닿지 않거나 위험하게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성이 표출될 수 있는 거리·높이로 하되 등기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동주택 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을 포함한 단지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옥탑에만 과도하게 조명을 계획하고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 조명환경지역별 건물표면휘도와 상향광속률,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색온도는 하층, 중층, 상층부를 조화롭게 구성하여야 한다. ◦ 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깜박거림, 색상의 변화 등은 자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도로, 주변환경 여건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 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운동/위락시설 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책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오픈스페이스조명기준을 준용하되, 벤치 등의 심터가 있는 곳은 블라드조명을 권장 한다. ◦ 운동시설 등 경기장에 설치하는 조명은 눈부심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기구를 사용한다. ◦ 조사각도는 KSC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변도로, 산책로, 단지내도로의 영역에만 비출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장 조도를 충족하는 위치와 높이에 설치한다. ◦ 경기장 내 및 주변에서 빛이 사람의 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도확보는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을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색온도는 3,000K 이상,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한다. ◦ 조사각도는 KSC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 조명영역을 이탈하여 주변에 빛 간섭을 주어서는 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구는 편도로 설치 하되 하천 반대편에 설치한다. ◦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 주유시설 조명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등기구로부터 표출되는 빛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하고, 주거지나 산책로 등에 침입되지 않아야 한다. ◦ 색온도는 3,000K 이상, 연색성지수는 60Ra 이상으로 한다. ◦ 조명이 주유소 건물 또는 구조물을 벗어나 도로, 산책로, 주거지 등에 침입되지 않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기가 설치된 천정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도나 휘도를 충족 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 야외조명 및 벽부등 등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2조의 조명환경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조사각도는 KSC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색온도는 조명목적에 따라 적용한다. ◦ 시설물에 부착하는 조명으로서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조명영역 이탈로 주변환경에 빛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조명의 경우 산책로에 조명기구를 설치 할 때에는 편측에만 설치한다. ◦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 공통사항

설치기준	설치위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좌 동

[별표 4]

시장분야별 시장인원

(단위 : 명)

종류별	시장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서울특별시조명상	9	1	4	4
조명학술분야	9	1	1	1
조명제조분야			1	1
조명설계분야			1	1
조명시공분야			1	1

[별지 제5호서식]

경관조명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고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경관조명협정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조명협정 운영회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p>「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조명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p> <p>서울특별시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1. 경관조명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조명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조명협정 운영 규약 4. 경관조명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조명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조명협정 관련도서 7. 경관조명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경관조명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

신고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 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		
경관조명협정명칭				
협정지역 위치				
유효기간				
주요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				
협정체결자수	외 명			
<p>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관조명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p> <p>년 월 일</p> <p>운영회 대표 (인)</p> <p>서울특별시시장 귀하</p>				
구비서류				
1. 경관조명협정운영회 규약				
2. 경관조명협정체결자 및 토지 등 권리 현황				
3. 경관조명협정체결자의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